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95

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 강대식 • 박준태 • 고동진

김상훈 • 조지연 • 유용원

임이자 · 김용태 · 주호영
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, 국군간호사관 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.

또한,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, 급여,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,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음.

그러나, 최근 들어 각군 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 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,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(안 제12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(양성비용 상환) ①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자(수탁생도는 제외한다)가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(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·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) 외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에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,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(이하 "양성비용"이라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.
 -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양성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 - 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(수업료,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)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양성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.
 -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성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양성비용 상환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(양성비용 상환) ① 간호사 관학교에 입학한 자(수탁생도 는 제외한다)가 2학년 1학기까 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신 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(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 체적・정신적 장애는 제외한 다) 외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 에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,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(이하 "양성비 용"이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.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양성비용을 상환 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의 등록금(수업료,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)을 감안하 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

<u>하는 양성비용을 산정하여야</u> <u>한다.</u>

①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성비용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 시하여야 한다.